
2025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25. 7.

목 차

I. 연수 개요	1
II.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방문	3
III.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방문	9
IV.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방문	14
V.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방문	21
VI.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센터 방문	25
VII. 출장 결과 및 시사점	31

1. 연수목적

- ☐ (1팀) 호주의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해하고 국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및 대응방안 모색
- 호주의 공적연금제도 관련 정책 및 현황, 제도개혁 등에 관한 시사점 등 자료 수집
- ※ 2024년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250만 명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 추진
- ☐ (2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 관련 법·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
- 호주의 법률구조 관련한 법·제도 사례 조사

2. 주요 일정

- ☐ 방문 기관

기관명	연수내용
<1팀: 노령연금 등 연금 관련 법·제도 연구>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호주의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조사 • 연금 등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목표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Legal Aid ACT)	• 호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제도 조사 •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정 조사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이해 • NSW주 부패방지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이해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NSWU Centre for Population Ageing Research)	•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기초연금(Age Pension)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센터 (NSWU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 복지 및 돌봄 등 사회정책 수립 시 연구센터의 역할 • 사회정책 관련 입법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절차

<2팀: 국민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연구>	
호주 연방 법무부 (Department of Attorney-General's)	• 호주의 법률체계와 연방법무부의 기능에 관한 이해 • 호주의 법률지원제도(Legal Assistance)와 법률구조제도(Legal Aid)에 관한 이해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Legal Aid ACT)	• 호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제도 조사 •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정 조사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이해 • NSW주 부패방지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이해
NSW주 입법사무국 (NSW Parliamentary Counsel's Office)	• NSW주의 입법절차 및 법안심사 절차에 관한 이해 •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운영 및 전자입법지원시스템 활용에 관한 이해
NSW주 의회 (NSW Parliament)	• NSW주 의회 입법과정에 관한 이해 • NSW주 의회 법률검토위원회(Legislation Review Committee)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이해

□ 1팀 출장 일정: 2025. 6. 15.(일) ~ 6. 21.(토), 5박 7일

일 자	주 요 일 정	참석자
1일차 6/15(일)	• 출국(인천 → 시드니)	연수단 전체
2일차 6/16(월)	• 캔버라로 이동(3시간)	연수단 전체
	• 기관방문 1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1팀
3일차 6/17(화)	• 기관방문 1 (호주 연방 법무부)	2팀
	• 기관방문 2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Legal Aid ACT)	연수단 전체
4일차 6/18(수)	• 시드니로 이동(3시간)	
5일차 6/19(목)	• 기관방문 3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ICAC)	연수단 전체
6일차 6/20(금)	• 기관방문 4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UNSW Centre for Population Ageing Research)	1팀
	• 기관방문 4 (NSW주 의회 사무국; Parliament Counsel's Office)	2팀
7일차 6/21(토)	• 기관방문 5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센터; UNSW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1팀
	• 기관방문 5 (NSW주 의회; Parliament of NSW)	2팀
8일차 6/22(일)	• 출국(시드니 → 인천)	연수단 전체

II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5. 6. 16. 14:00/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회의실

□ 참석자

○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 Ms Kelly Carr (Executive Officer)

: Andrea Wallace-Green (Branch Manager)

: Xia Du (Director, Age Pension and Payment rates policy Team)

: Lulu wan (Assistant Director, Age Pension and Payment rates policy Team)

: Kate Chan (Assistant Director), Dan Frost (Assistant Director)

○ (출장단)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박일남 사무관, 김세연 주무관 및 중앙행정
기관 법제업무담당자 19명

□ 방문 주제

○ 호주의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조사

○ 연금 등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목표

2. 기관 개요

□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의 연혁

○ 호주의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1901년에 연방정부 구성 후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다가, 1941년에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담하게 함.

–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등을 거쳐 2013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부로 개칭됨.

- 호주의 개인, 가족 및 취약 계층의 경제·사회적 복지 개선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 가족 복지, 장애인 및 고령자 지원, 주택 문제 해결 등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함.
- 실업 수당, 장애 수당 및 연금 등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Centrelink)을 통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함.

□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의 기능

- 연금, 실업 수당, 장애인 지원 등 저소득 가정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보장과 복지를 담당함
- (가족 복지) 아동 보호, 부모 교육,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함. 특히 아동 수당(Child Care Subsid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
- (장애인 및 고령자 지원) 고령자 지원을 위한 연금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시행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 및 고용 기회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주택과 빈곤 해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다양한 주택 비용 지원 및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 (커뮤니티 서비스와 지역 사회 강화) 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및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논의 내용

□ 호주의 노령연금 제도 개요

○ 노령연금 연혁

- 연방정부를 구성(1901)하기 전부터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주 등에서 실시한 노령연금(Age Pension)을 기반으로 ‘장애 및 노령연금법’(1908년)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노령연금 등이 지급됨.

○ 노령연금의 주요 근거 법률

- Social Security Act 1991: 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액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는 법으로, 연금 수급 연령, 거주 요건, 노령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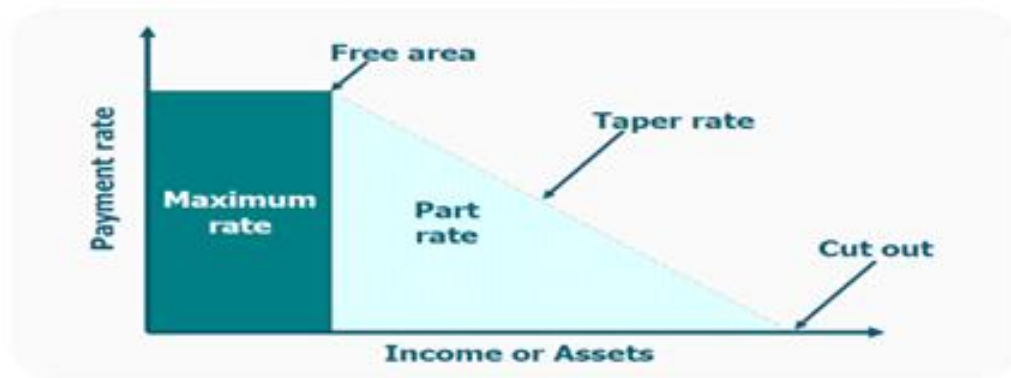
○ 호주의 은퇴 후 3대 소득 시스템

- 노령연금(The Age Pension):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지원연금
- 퇴직연금(The Superannuation Guarantee):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은퇴 후 그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연금
- 자발적 개인연금저축(Voluntary Private Savings):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적립한 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 기준

- 연령 요건: 67세 이상
- 거주 요건: 최소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였을 것
최소 5년 이상 연속하여 호주에 거주하였을 것
- 자산 및 소득심사 요건: 특정 금액 미만의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 * 소득 심사: 출처가 명확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고용, 해외 연금,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금융 투자 등이 포함됨.
 - ** 자산 심사: 개인이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자산의 순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은행 계좌의 자금, 주식,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주거용 주택과 최대 2헥타르의 인접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The Operation of Means Tests



Income and Assets cut outs

Income

Status	Income free area (fortnightly)	Cut out (fortnightly)
Single	\$212.00 [₩ 188,113.96]	\$2,510.00 [₩ 2,227,198.30]
Couple (combined)	\$372.00 [₩ 330,086.76]	\$3,836.40 [₩ 3,404,152.81]

Note: Currency conversion on 3 June 2025

Assets

Status	Assets free area	Cut out
Single - Homeowner	\$314,000 [₩ 278,621,620.00]	\$697,000 [₩ 618,469,010.00]
Single - Non-homeowner	\$566,000 [₩ 502,228,780.00]	\$949,000 [₩ 842,076,170.00]
Couple (combined) - Homeowner	\$470,000 [₩ 417,045,100.00]	\$1,047,500 [₩ 929,478,175.00]
Couple (combined) - Non-homeowner	\$722,000 [₩ 640,652,260.00]	\$1,299,500 [₩ 1,153,085,335.00]

○ 노령연금의 지급률

-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3월 기준 독신인 경우 2주당 약 102만원, 부부인 경우 합산하여 2주당 약 154만원이 지급됨.
- 매년 3월과 9월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금 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 중 더 높은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함.

○ 노령연금의 지급 관련 통계

- 수급자의 67%는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부분 지급을 받는 33% 중 54%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나머지 46%는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률이 감면됨.
- 수급자의 15%는 민감 임대 주택 또는 지역 사회 주택에 드는 비용을 위해 임대료 지원을 받으며, 수급자의 56%는 여성임.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질의응답

-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최저기여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은 없었는지?
 - 퇴직연금의 고용주 최저기여율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11.5%이며, 올해 7월에 12.5%로 추가로 높아질 예정임. 최저기여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특별한 갈등은 없었음.
 -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현행 11.5%는 최저 기준이고, 직업군에 따라 그 비율이 다름. 예를 들면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공무원은 15.8%의 기여율을 적용받고 있음.
- 호주도 고령화 문제로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가 늘어날 텐데 예상되는 지급 문제는 없는지?
 - 호주는 199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향후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지급금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됨.
- 호주 노령연금을 받는 요건 중 하나는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인데, 이는 1962년에 기존 거주기간 요건인 20년에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다시 늘리자는 주장은 없는지?
 - 예전에 자유당(Liberal Party)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15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 현재 다수당인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은 요건에 대한 개정 계획 없음.

□ 호주는 ‘노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기준이나 합의가 있는지?

- 호주에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노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기준이나 합의도 없음. 다만, 호주에서는 퇴직연금과 노령연금을 각각 60세와 67세 이후부터 지급하며, 60세 이상에게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Senior card 제도가 별도로 있음.

4. 기관 방문 사진



III

호주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ACT)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5. 6. 17. 10:00/ Legal Aid Act 회의실

□ 참석자

○ (Legal Aid ACT)

: Mr John Boerig (Chief Executive Officer) 외 4명

○ (출장단)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김혜영 서기관, 박일남 사무관, 서원주 주무관,
김세연 주무관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38명

□ 방문 주제

○ 호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제도 조사

○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정 조사

2. 기관 개요

□ Legal Aid ACT의 연혁 및 역할

○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1977년 제정된 「Legal Aid Act 1977」 따라 설립됨.

– 1970년대 호주 전역에 Legal Aid Offices가 설립되면서 법률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약 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형사법, 가족법, 가정폭력, 이민, 인권, 부당 추심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함.

□ Legal Aid ACT의 추구 가치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 － 높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존엄과 그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 － 법률 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 －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치와 최고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3. 주요 논의 내용

□ Legal Aid ACT의 주요 활동

- 법률지원 상담
 - － (핫라인 서비스) 매년 약 25,000건의 법률지원에 대한 유선 상담
 - －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 또는 병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법률 구조에 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 폭력에 노출된 아이 또는 여성 등을 법률 보호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지원 대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를 자주 방문
- 법정 대리 등 분쟁 해결 서비스
 - － 사건 관련 자문·조언, 서류* 작성 및 제출, 변론, 휴정신청, 구속 기간 연장 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한 업무** 처리
 - *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무죄 변론서, 유죄·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서 등
 - ** 법원에 처음 온 지원자들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자문뿐 아니라, 주대법원부터 연방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례 다수

- 특히, Legal Aid ACT의 형사 사건팀은 20명 정도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8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0명 정도의 의뢰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직 변호사가 법원에 있으면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문을 진행

○ 법률구조에 대한 홍보

-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들의 권리 또는 Legal Aid ACT의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최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SNS도 적극 활용* 중임.

* 젊은 세대일수록 직접 Legal Aid ACT를 방문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SNS를 도움을 받는 창구로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관련하여 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법령안 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함.
- 특히, 코로나 시기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법령안(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나아가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퇴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소송을 대리하기도 함.

Legal Aid ACT 질의응답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지원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 주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 지수*, 사건 자체의 중요도, 지원의 필요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
 - * 빈곤 지수는 단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차, 피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1400만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Legal Aid는 그중 60%인 800만명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입한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지? 한국의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유사한 듯한데, 승소율은?
 - 사건 중 70%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30%를 외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맡김.
 - 민간 로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승소율보다 사건 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Legal Aid ACT는 돈을 버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고객과 법률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승소율이 매우 높은 편임.
-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 시 정규 업무시간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예산 사정으로 인해 주 7일 24시간 내내 법률구조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구속적부심 등의 경우 주말에도 지원하고 있음.
- 변호사의 경우 채용단계부터 담당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지?
 -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드는 트레이닝 비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전문분야를 구분해서 채용함.
 - 다만, 근무를 하면서 전문분야가 변경되기도 함.

□ 법령 개정 시 Legal Aid ACT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는지? 정부와 의견이 다른 경우 강하게 Legal Aid ACT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 변호사로서 조언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Legal Aid ACT의 “장”은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 정부가 바로 해임할 수는 없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Legal Aid ACT의 주요 업무가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 구조 지원이므로, 독립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다만,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음.

4. 기관 방문 사진



IV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방문

1.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025. 6. 18. 10:00/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회의실
- ☐ 참석자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
 - : Mr. Lewis Rangott, Executive Director Corruption Prevention
 - : Ms. Margaret Sutherland, Senior Corruption Prevention Officer
 - : Ms. Susan Denley, Senior Corruption Prevention Officer
 - (출장단)
 -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김혜영 서기관, 박일남 사무관, 서원주 주무관, 김세연 주무관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38명
- ☐ 방문 주제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이해
 - NSW주 부패방지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이해

2. 기관 개요

-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운영 현황
 - ① (연방)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23년 설립(근거 법률: NACC ACT 2022)
 - ② (New South Wales주) NSW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89년 설립
 - ③ (Victoria주) VIC 광범위독립부패방지위원회(IBAC) '12년 설립
 - ④ (Queensland주) QLD 범죄부패위원회(CCC) '01년 설립

- ⑤ (South Australia주) SA 독립청렴위원회(ICAC) '13년 설립
- ⑥ (Western Australia주) WA 범죄부패위원회(CCC) '04년 설립
- ⑦ (Tasmania주) TAS주 청렴위원회(IC) '10년 설립
- ⑧ (Northern Territory주) 북부 준주(NT)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18년 설립
- ⑨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 호주 수도 준주(ACT) 청렴위원회(IC) '19년 설립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연혁

- (설립연도) 1989년
- (법적근거)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NSW)
 ※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부패방지기구로 NSW주 정부 내 부패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 (부패 조사) 주 공무원, 정치인, 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등 NSW주 내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 의혹 감시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 (부패 방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방지 방안 권고
- (교육 및 홍보)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부패 인식 제고와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실시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조직 구조

- NSW주 내 부패 방지를 위한 상설 위원회(Standing Royal Commission)로 주의회와 주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임
 ※ Royal Commission은 특정 분야의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주정부가 설치하는 독립된 조사기구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있음
- 위원장(Chief Commissioner) 1명, 부위원장(Commissioner) 2명,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1명과 약 160명의 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4개 부서(Division)과 3개 팀(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 논의 내용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의 주요 역할(role)

- 부패 의혹 또는 부패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
- 접수된 신고 또는 부패 행위 등에 관한 조사
- 부패 방지 방안 등에 관한 권고
- 증거 조사 및 부패 행위 관련 통계 관리
- 조사 결과보고서 등의 발간
- 부패 방지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부패 행위의 개념 및 조사 대상 범위

- 1988년 제정된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에 규정된 부패 행위는 과실이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NSW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관여되거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 지위의 권력, 지식정보 또는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또는 직무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행사하여 공적 신뢰를 저버리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잘못 사용한 경우
 -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경우
- 다음으로 NSW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무원은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법에 공무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무원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NSW주 의회, 주정부 부처, 사법기관 및 지방 의회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NSW주 공무원, 치안 판사, 판사 및 의회 의원은 모두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됨.

- ICAC는 NSW주 경찰관 또는 NSW 범죄위원회 경찰관의 행위를 조사할 수는 없는데 대신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법 집행행위 위원회)가 경찰과 관련된 부패 혐의 조사 권한이 있음.
- 공공기관의 범위는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법에 정부기관, 행정 사무소 또는 교육기관, 왕실을 대표하는 법정기관, 지방정부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주요 권한

- 부패 활동을 조사할 때 소환장 발부 및 증인 심문, 압수수색 및 증거 수집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부패 조사 등을 위해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부패 활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기소는 하지 않지만 검찰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NSW주의 부패방지 관련 주요정책

- (공공기관 투명성 기준 강화)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ICAC의 부패 방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준수) 공익제보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윤리 행동명령 준수) 윤리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이해충돌 행동 기준 준수
- (주기적인 감사 실시) 관계 독립감사기관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감사(Audit)를 통해 부패 활동 사전 식별
- (부패 취약성 평가 실시) 기관별로 맞춤형 부패 취약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 분석 및 취약점 개선

□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의 최근 주요 조사 사례

- (2021년 ~ 2023년) NSW주 前 총리였던 Gladys Berejiklian가 연인 관계에 있는 지역구 의원 Daryl Maguire이 관여하는 개발 사업에 보조금을 승인·지원한 것은 심각한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ICAC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함

NSW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질의응답

□ ICAC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Inspector)은 우리나라 감사원과 같이 재정·회계 분야부터 부패 행위까지 전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폭넓게 조사 또는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 ICAC의 조사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활동·행위에 대해서만 감시·관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에 대한 회계 분야에 관한 조사 등은 별도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 NSW주 의회에서 ICAC를 관리·감독을 하지만 해당 관리·감독은 질의 조사 정도의 수준이고 별도 명령 등을 통해 부패방지독립 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선거 기간과 같이 특정 기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공개 금지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참고로 한국은 선거기간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어 있음.

- 별도로 그러한 제도나 규정은 없으며, ICAC는 독립된 위원회로서 연중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 행위 등을 조사하여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ICAC에서 부패 행위 조사 등을 처음 시작할 때 신고 또는 제보에 의존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지 아니면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이나 주기 등을 정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부패 활동 등을 조사하는지?

- 전체 조사건수의 약 80%는 내부 고발 등과 같이 ICAC에 신고되거나 접수되는 민원을 통해 조사 업무를 착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는 경찰조사 등을 통해 통보되는 부패 활동에 대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실제 ICAC에 직접 신고되거나 경찰을 통해 통보되는 조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신고 사건들을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경우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 그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ICAC가 법률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 과정에 관여하여 사전에 부패 예방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패유발요인은 없는지 사전에 분석·검토하고 있음.

- 법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ICAC에서 부패유발요인이나 위험(risk)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줄 수는 있음. 그러나 ICAC는 법령 제·개정이나 입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견을 주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상의 입법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음.

□ ICAC가 타 기관에 부패 관련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정 관련 업무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 통상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는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리포트 작성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거치고 있음.

□ ICAC의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임명권자의 교체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 위원장(Chief Commissioner)과 부위원장(Commissioner) 3명은 NSW주 총독(Governor)이 임명하고 있는데, 위원장(임기 5년)과 총독(임기 4년)의 임기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정당 교체로 총독이 위원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는 전혀 없었음.

4. 기관 방문 사진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5. 6. 19. 10:00/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 참석자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 : John Piggott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소장
 - : Silke Weiss 연구센터 매니저
 - (연수단)
 - : 박일남 사무관, 김세연 주무관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19명
- 방문 주제
 -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기초연금(Age Pension)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2. 기관 개요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의 연혁
 -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의 인구고령화 연구센터(The Centre for Population Ageing Research, CEPAR)에 속한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관한 연구기관
 - 2011년 호주 연구위원회(ARC)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현재 호주국립대학교(ANU), 커틴대학교, 멜번대학교, 시드니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영 중임.
 -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여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목적으로 함.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의 기능

- 고령화, 연금, 복지 정책, 경제 등에 대해 연구하여 인구 고령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함.
- (노후 소득 및 연금 정책)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시스템을 분석
하고,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
- (건강 및 복지) 고령층의 건강 및 의료 접근성에 대한 연구와 노인
대상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 (노동시장 및 은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 시점
연구와 고령층의 생산성 및 경제적 기여 분석
- (인구 고령화와 경제) 호주 및 국제 사회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및 정부 자문 역할 수행

3. 주요 논의 내용

□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 (적정성, Adequacy) 기본 생활수준의 보장
- (형평성, Equity)
 - 수평적 형평성: 과거 근로 경력이나 납부한 세금과 근거하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 수직적 형평성: 자원(연금)이 가장 부족한 사람을 대상 우선 지원
- (자가 지원, Self-Provision)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 및 개인 저축을 권장

□ 호주 고령층의 주요 수입원(소득)

- ①기여금 없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The Age Pension),
②근로자일 때 고용주가 적립한 금액을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연금
(The Superannuation Guarantss), ③개인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거나
저축하여 적립한 개인연금(Voluntary Private Savings)이 맞물려 작동

□ 퇴직연금의 개요

- 호주의 퇴직연금은 국가가 아닌 사적 은행에 납입하는 것으로, 해당 은행 등은 전적으로 당사의 책임 하에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을 내는데,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8%로 상당히 높은 편임.
- 퇴직연금을 국내 재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퇴직연금은 의무저축과 선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근로자일 때 적립한 만큼 받도록 설계*됨.
 - *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92년 임금의 3%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11.5%까지 상승하였고,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25년 7월부터는 12.5%로 상향 조정
- 다만, 고령층의 주요 수입원의 비율은 다르더라도 평균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보장받는 구조여서 사회안전망(기금)으로서의 연금(적립액)에 대한 위협 요인이 존재함.
- (개인 측면) 근로자로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노령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노령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 (정부 측면)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보듯 적립된 기금을 정부 자금으로 사용할 위협
- (노령연금 측면) 기여금 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존재는 근로를 장려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 연금의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많아지면서 노령연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퇴직연금을 적립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도 정부에서 퇴직연금 적립을 권장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센터 질의응답

- 초고령사회인 한국도 연금과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적 조언을 한다면?
 - 호주는 수입이 없는 노년에 각 개인의 기여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초반에는 노령연금과 같이 기여금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여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한국은 기여율이 낮은 편이므로,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연금은 적립한 만큼 지급하는 구조로, 퇴직연금의 비율이 높다면 출산율과 상관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부정 연금수급에 대한 호주의 대책은 무엇인지?
 - 부정수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장래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므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압도할 만큼 부정수급의 수요가 크지 않음.
 - 또한, 연방 사회서비스부 또는 Centrelink에서 개인의 계좌 및 자산에 대해 거의 전부 조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낮음.

4. 기관 방문 사진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5. 6. 20. 10:00/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John Goodsell Building 사회정책 연구센터 강의실
- 참석자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센터)
 - : Dr Kailey (Director),
 - : Ms Loren Brener (Deputy Director)
 - : SPRC 소속 연구자 4명, Human Rights Institute 소속 연구자 1명
 - (연수단)
 - : 박일남 사무관, 김세연 주무관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19명
- 방문 주제
 - 복지 및 돌봄 등 사회정책 수립 시 연구센터의 역할
 - 사회정책 관련 입법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절차

2. 기관 개요

- 사회정책 연구센터의 연혁 및 구성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의 사회정책 연구센터(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SPRC)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UNSW 산하 연구기관으로,
 - 약 40명의 연구진, 30명의 대학원생 및 1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정책의 개발·평가·실행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1980년 UNSW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정책 연구 및 정책 평가 전문기관으로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 옹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둠.
- 현재 SPRC(Social Policy Research Centre)와 CSRH(Centre for Social Research in Health)의 두 개의 센터가 통합된 구조로 운영, 두 센터는 브랜드는 분리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사회정책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

- (불평등·복지 측정, Social Inequality & Wellbeing): 빈곤·불평등의 실태 및 영향, 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척도 연구
- (돌봄, Care): 가족, 지역사회, 시장, 국가 간 돌봄 관계와 노동 분배, 그 혜택 및 비용을 연구
- (장애 정책, Disability): 장애인을 포함한 연구 수행, 관련 정책·교육·이벤트 기획
- (가족·지역사회, Families & Communities): 육아, 성 역할 분배, 아동 및 가족의 복지 및 지원체계 분석
- (정책 설계·영향·평가, Policy Design, Impact & Evaluation): 각종 사회정책(예: 조기 개입, 주택 공급, 교육 등)의 설계·출시 및 경제·사회적 효과 평가

3. 주요 논의 내용

□ Poverty and Inequality Partnership (빈곤과 불평등 파트너십)

- UNSW SPRC와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의 공동 연구 및 정책 파트너십, 빈곤과 불평등 실태 파악 및 정책 변화 유도를 목표로, 현재 2단계(2023~2027) 진행 중임.
- 현재 호주에서는 330만 명이 빈곤 기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 성인 8명 중 1명, 아동 6명 중 1명에 해당

- 상위 20% 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41%, 자산의 64%를 보유하고, 하위 20%는 각각 6%, 1%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호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 구조를 나타냄.

* 한국보다 낮지만, 영국 및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

- 보고서 25건 발간, 의회 언급 100회 이상, 웹사이트 방문자 일일 약 1,000명, 총 다운로드 45,000건 이상 등의 결과로 보듯이 대중 및 의사결정자 인식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Carer Gateway (돌봄제공자 지원 플랫폼)

- Carer Gateway는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통합 돌봄지원 시스템으로, 장애인 및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SPRC는 이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수행함.
- 웹사이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지역 돌봄 서비스에 연결
 - 온라인 코칭,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주택 유지보수, 응급 돌봄 등
- 대부분의 돌봄제공자에게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휴식지원(respite)’과 ‘응급돌봄(emergency respite)’이 고 위험 돌봄제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선정되었으며, 외곽지역 및 농촌 지역의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확인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5년간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 다만, 국가장애보험제도와 요양보호 등 제도 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정책 개선 논의 중임.

□ 생활예산기준(Budget Standards)

- 호주의 생활예산기준은 특정한 가족이 특정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UNSW SPRC가 선도적으로 연구·개발한 정책도구임.

- 8개 핵심 항목(식비, 주거비, 의류,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여가) + 2개 선택 항목(주택소유 여부 등)으로 구성됨.
- 27개 가족 유형에 대한 주 단위의 생활비를 산출하고, 단순 생존이 아닌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적정 기준'을 적용함.
- 2022년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서 생활예산기준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 결정한 바 있음.
- 2024년 사회서비스부(DSS)의 자녀 양육비 검토와 지급 기준 검토 시 활용, 경제포용자문위원회(EIAC)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실태 평가에 기반자료로 반영함.
- 평균지출이 아닌 '필요 지출' 기반 산정으로 복지정책 설계의 정밀도 제고, 저소득층 실태 파악 및 사회보장 정책 수당 기준 설정에 핵심 기초자료 역할을 함.

□ Foster Care (위탁보호 아동 양육비용 산정 연구)

- NSW주정부의 위탁보호서비스 재정 검토에 따라 위탁가정 수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호주가족연구소(AIFS)의 의뢰를 받아 예산 기준을 바탕으로 위탁아동 양육비용을 산정 중임.
- 2024년에는 일반아동의 생활예산기준을 활용하여 위탁가정 아동의 식비를 15% 인상함
- 위탁가정 수당의 구조적 현실화, 민간 위탁기관과의 계약 기준 재정비 근거 확보

□ Human Rights (인권 기반 정책 연구)

- (주요 연구 주제) 장애인 의사결정권 보장(supported decision-making), 아동권리협약(CRC) 기반 정책 평가, Carer Gateway, 노인돌봄보험 제도 등 제도 간 연계성과 인권 보장 분석
- (접근 방식)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사람 중심 · 권리 중심 정책 평가, 취약계층의 참여와 경험을 반영하는 실증 조사 중심

- (정책 기여) 법률 개정안 제안(장애인 후견인 제도 등),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정부 자문 및 제도 개선 촉진, 자원봉사 정의 확대 및 공식 통계 항목 변경 유도 등 실질적 변화 유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센터 질의응답

- 생활예산기준(Budget Standards) 산정 시 포함되는 가정용품 및 서비스 항목 총 198개는 한 가구에 해당하는 것인지?
 - 27가지 가족 유형에 따라 예산을 산정하며, 가족 규모, 성별, 고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누며, 각 가족 유형마다 예산이 달라짐.
 - 예를 들어 고용여부와 성별에 따라 일하는 독신 여성은 주당 111달러, 실직 중인 독신 여성 주당 92달러, 이러한 방식으로 식비, 의류, 여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지출 항목과 비율을 계산함.
- 예산 산정 방식 관련하여 여러 가구의 평균을 사용하는지?
 - 그렇지 않음. 평균이 아닌 특정 가정 유형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항목별 소비 기준을 산정
 - 예를 들어 40세 남성, 35세 여성, 8세, 11세 자녀 1~2명을 둔 부부 가정의 식비, 의류, 학교비용 등 항목별로 정확한 품목 수와 수명, 가격 등을 산정하며, 영양사가 제공하는 건강한 식단의 가격 기준이 되기도 함.
- 현재의 구매력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 1998년도 구매력 기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6년에 건강 및 문화생활 분야가 추가되어 현재의 구매력 기준이 설정됨.
 - 우리가 설정한 구매력 기준을 정부정책에 사용하는데, 지난 2022 ~ 2023년 호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설정에 사용되었으며, 아동 지원 예산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설정에 쓰임.

4. 기관 방문 사진



□ 연금 정책 사례 관련

- 호주는 1908년부터 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하여 현재는 사회적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고령화라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의 기여율을 서서히 상승시켜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랜 역사와 튼튼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하여 큰 사회적 저항 없이 종전 11.5%에서 올해 7월부터 12.5%로 기여율이 상향 조정됨.
- 호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충분한 수준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는 더 많이 보장하며, 근로가 가능한 경우 유급 노동 참여를, 퇴직 후에는 퇴직 연금과 그동안의 개인 저축으로 생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호주는 노인, 장애인, 간병인 그리고 재향 군인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고, 구직자와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자녀 양육비, 의약품비와 주택 임대 관련 비용도 지원함.
- 이렇듯 잘 짜여진 사회보장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호주는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세 가지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함. 이로써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충적 지원, 개인 저축이 고갈된 사람에게도 지원을 하여 모두가 걱정 없는 노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구성함.
-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호주도 부당 수급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독립부패방지위원회 등의 기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또한 호주는 다른 나라와 사회 보장 협정을 통해 국가 간 이주자들의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32개국과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예전에 호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간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서 호주로 온 사람 모두 지금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됨.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호주 영주권 기간과 한국의 보험 기여 기간을 합산하여 노령연금의 최소 영주권 기간은 10년을 채울 수 있음.

☞ 시사점

-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초유의 인구감소의 위협에 직면한 바,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한 사회보장 위에 각자의 노력이 더해져 호주라는 건강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시스템과 이를 수용한 호주의 성숙한 시민사회의 성공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지금부터라도 세대 간 또는 경제적 부 격차 간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 관련

- 호주의 법률구조제도(Legal Assistance)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mmission)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중점)에 제공되는 무료 공공 법률서비스(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주도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호주의 법률지원제도(Legal Assistance)는 법률구조제도(Legal Aid)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법률서비스제도를 의미하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영리단체, 변호사·로펌 등의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여 원주민·이민자 등 경제적·법률적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지원서비스로 그 지원방식은 법률상담, 온라인 법률정보제공, 법률교육, 조정, 통역, 변호사의 공익활동(pro bono) 등으로 다양함.

- 특히 호주에서는 변호사 등의 공익활동(pro bono)을 중개·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Australian Pro Bono Centre(APBC)을 2002년에 설립하여 로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에게 연간 최소 35시간 이상의 공익활동(pro bono)을 권장하고 있음.
- 즉, 호주의 법률구조 및 법률지원제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영리단체 및 민간 분야 등이 통합된 협력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고 그 접근성 또한 높은 측면이 있고, 변호사 등의 공익활동(pro bono)을 체계적으로 중개·지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가 있어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가 확립된 특징이 있음.

☞ 시사점

-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고령화가 강화됨에 따라 노인빈곤층,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법률구조(法律救助)는 「법률구조법」¹⁾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심으로 단일 구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영리단체 및 민간 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1)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특히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 법률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 활동(pro bono)을 체계적으로 중개·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공플랫폼(public platform)을 구축·운영하여 누구든지 공공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중개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법」 제27조2)에서 변호사에 대해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연간 합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